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1. .

특 허 청 장
(법제처 심사 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등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특허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료·실용신안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개인·중소기업의 특허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수료 인센티브로서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4년분 이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감면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한편 감면대상이 되는 개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 지식재산 경영의 확산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에 대한 특허료 등의 추가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후 2회차 상표등록료 납부 전에 상표권이 분할(분할이전)된 경우에 각 상표권의 2회차 상표등록료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며, 특허법 제199조(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심사청구 시에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국제조사 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사본을 이용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심사 청구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등의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 이후 첫 번째 근무일까지 수수료 등을 납부할 있도록 하며, 서면으로 발급하는 특허(등록)증 대신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수령 시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료 등의 감면대상인 ‘개인’의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7조제2항제2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가 ‘개인’으로서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같은 경우에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의 감면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출원인이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출원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가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같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특허료 등의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

나. 4년분 이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감면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안 제7조제2항제9호)

종전에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감면대상으로 개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만 해당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4년분부터의 특허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특허권 등의 권리유지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특허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함.

다.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연차등록료 감면비율 및 감면기간 확대 (안 제7조제2항제9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가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종전에는 4년분부터 9년분까지 100분의 30을 감면하였

으나 4년분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존속기간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등이 장기간 보유해야 할 핵심(원천)특허 등의 유지비용 감소로 특허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를 촉진함.

라.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 시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을 수령하는 경우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 (안 제7조제2항제12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설정등록시 특허(등록)증을 서면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수령시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발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서면 특허(등록)증 발급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연차등록료 추가 감면 유효기간 연장 (안 제7조제3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을 대상으로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추가 감면(100분의 20) 유효기간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 권장과 지식재산 경영을 확산시켜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바. 개인·중소기업의 특허창출 활동에 대한 수수료 인센티브로서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및 지식재산포인트의 사용범위 확대(안 제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개인·중소기업의 특허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중소기업이 특허창출활동을 많이 한 경우 2023년까지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 도입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중소기업에게 수수료 인센티브로서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공 받은 지식재산포인트를 상표등록료 및 상표관련 수수료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특허 창출활동을 촉진함.

사. 수수료 등의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일 연장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8조제2항)

수수료 등의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 이후 첫 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출원인 등에게 수수료 등의 납부 편의 제공과 납부일 경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을 방지함.

아.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납부방법에 관한 내용에 맞게 조문을 명확화 (안 제8조제7항 및 제8조제7항제1호)

상표등록료는 상표법 제7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납부방법에 관한 내용에 맞게 조문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자. 상표등록료 분할납부 후 2회차 등록료 납부 전에 상표권이 분할(분할이전)된 경우 각 상표권의 2회차 등록료 납부방법 명확화(안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3호)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2회차 등록료 납부 전에 상표권이 분할(또는 분할이전)된 경우 각 상표권별로 2회차 등록료를 설정등록일 또는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납부방법을 명확히 규정하

여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후 2회차 등록료 납부 전에 상표권이 분할 (분할이전)된 경우 2회차 등록료의 납부방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함.

차.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심사청구료 감면 신청시 서류제출 부담 경감(안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특허법 제199조(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심사청구 시에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사본을 이용하는 취지를 기재 하여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 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 신청 시 출원인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 결과,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

- 규제 신설·폐지 등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출원인이”를 “출원인,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제7조제2항제10호(중건의 제9호) 중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및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와 상표권의 설정등록료를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하면서 특허(등록)증 수령방법을 전자파일 수령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와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설정등록료만 해당한다)에서 1만원을 감면한다. 다만,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을 감면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2022년 2월 28일까지는 다음”으로, “중기업 및”을 “중기업에 대하여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70까지 감면할 수 있고”로, “2018년 2월 28일까지는 4년분”을 “4년분”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다음”을 “다음”으로, “행위를 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2. 개인, 소기업, 중소기업이 연간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출원료,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합계액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7조의2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는 제외하며, 국제출원수수료”를 “국제출원수수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토요일”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상표등록료”를 각각 “상표권의 설정등록료”로, 같은 호 중 “상표등록료는”을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분할이전하거나 「상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을 “존속기간갱신등록료(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분할이전하거나 「상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심사청구한”을 “심사청구하거나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중 하나의 사본을 이용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심사청구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사청구한”을 “심사청구하거나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모두의 사본을 이용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심사청구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이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의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효기간 이후 지식재산포인트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 제1항 후단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7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3. ~ 8. (생략)

<신 설>

9.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10. (생략)

<신 설>

-----.

3. ~ 8. (현행과 같음)

9.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10. 중견기업-----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2.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와 상표권의 설정등록료를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하면서 특허(등록)증 수령방법을 전자파일 수령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와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 1항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설정등록료만 해당한다)에서 1만원을 감면한다. 다만,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까지는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④ ~ ⑧ (생략)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③ ----- 2022년 2월 28일까지는 다음 ----- 중기업에 대하여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70까지 감면할 수 있고 -- 4년분-----

1.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사용 및 환수) ① ----- 다음 -----

디자인권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경우-----

----- . 다만, 제2호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2. 개인, 소기업, 중기업이 연간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출원료,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

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⑦ 상표등록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상표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상표등록료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및 토요일-----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

1.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분할이전하거나 「상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

2. (생략)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포함한다)는 「상표법」 제8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상표권의 갱신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⑧ ~ ⑱ (생략)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 ③ (생략)

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

--.

2. (현행과 같음)

3. -----

-- 존속기간갱신등록료(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분할이전하거나 「상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각 상표권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포함한다)는 --.

⑧ ~ ⑱ (현행과 같음)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 심사청구료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생략)

⑤ ~ ⑧ (생략)

심사청구하거나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모두의 사본을 이용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심사청구한 -----

-----.

3.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